

신학위원회 규정

제정 : 2010. 11. 09.

개정 : 2015. 02. 06.

담당 : 교목실(02-950-4334)

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위원회 기능)	제3조(구성)	제4조(위원의 임기)
제5조(회의소집과 의결)	제6조(회의록)	제7조(시행세칙)	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신학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본 대학교의 신학노선의 정립에 관한 사항과 교직원 및 학생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학적 문제가 제기될 경우 이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도하며, 기타 신학적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본교의 입장을 논의하고 정리하여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학교의 신학정체성에 관련된 사항
2. 교직원 및 학생의 신학정체성 및 신앙생활에 대한 사항
3. 사회적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한 신학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
4. 총장이 인정하여 토의 및 결정을 요청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총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
-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총장이 임명한다.
- ④ 위원은 성서학과 교수 또는 목사로 한다.(개정15.02.06)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소집과 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/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/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이 서명 날인한다.

제7조(시행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 (개정15.02.06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1월 0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.